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경훈 의원 외 33명
- 의안번호 : 제1695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2. 제 안 이 유

-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'경관 자원'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제2항 제8호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‘경관 자원’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개정¹⁾으로 제5조에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‘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’이 추가된 바 있음.

또한, “경관 자원”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경관숲의 정의²⁾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우수한 산림의 ‘경관 자원’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음.

-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에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 됨.

1)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4. 4. 3] [법률 제19879호, 2024. 1. 2, 일부개정]

2) 경관숲 :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